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보훈위탁병원 의료서비스 개선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내 보훈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훈청은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훈위탁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는 대상 및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제주도 내에 보훈병원 설립까지는 불가하더라도 보훈위탁병원 내 의료혜택이 보훈병원에 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주고, 특히 75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보훈위탁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및 전립선 질환 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원해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매년 중앙부처에 보훈위탁병원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건의하고 있고, 국가 예산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 내 보훈위탁병원에서는 타지역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보훈 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나, 보훈 위탁병원은 국비 대상자(상이 유공자 등)의 MRI, 초음파 검사, 건위소화제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 제주도 내 보훈위탁병원에서는 대장내시경 및 전립선 질환관련 진료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계 법령 등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

□ 판단 및 결론

- 보훈위탁병원도 비급여 항목(대장내시경, 전립선 질환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은 유공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점,
- 의료서비스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병원에서 지원받는 항목을 보훈위탁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주도 내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문

- 신청인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차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지원은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다는 현실적 여건도 존재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건의하고,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합의)

□ 민원 제목 : 구좌읍 세화리 방지턱 설치 요청

□ 신청 취지

- 다량취북로 ○○○번지 앞 도로는 비자림 용늪이 오름, 제주레일 바이크, 다량취 오름 등 주변관광지 방문으로 많은 렌트카들과 주민들의 농사로 인한 트럭, 중장비 차량 등의 과속을 일삼는 도로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노루, 고라니, 고양이 등의 야생동물이 빈번하게 로드킬이 벌어지고 있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2022. 2. 9. 해당민원 접수 후 소관부서인 제주도 건설과로 민원 전달을 하였고, 2022. 4. 11. 제주도 건설과·경찰서·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등이 제주도 동부지역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2022. 4. 13 제주도 건설과로부터 '추월 차선 설치 구간 및 급경사 구간으로 설치 불가하다' 합동점검 결과가 통보되었다.

□ 사실관계

- 우리 위원회에 민원제기한 해당 도로를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한 결과,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차량의 통행속도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 이후 2023. 5. 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좌읍·제주시 건설과가 현장조사 및 회의를 진행하여 가상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23. 6. 8. 구좌읍·제주시 건설과·동부경찰서·도로교통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속도제한 노면표시, 가상 과속방지시설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이 가능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 관계 법령 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681호)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구좌읍 다량취 북로에 속도제한 노면표시, 가상 과속방지시설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통화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신청인이 감사함을 표시하며 수용하여 합의해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합의해결하기로 한 후 피신청인이 추진상황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3. 9. 5 현장을 방문하여 속도저감 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였다.

○ 합의내용

- 피신청인은 제주도 구좌읍 다량취북로 313번지 앞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차량의 통행속도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하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상(이미지) 과속방지턱의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기로 하고 2023. 8. 30일 설치를 완료 하였다.

- 신청인은 다량취북로 가상(이미지)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 설치를 확인하고 민원사항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